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467호**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8월 2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산업·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품 생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요건을 보완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직접생산 확인시 “생산공장 인정 요건”에 대한 특례(제7조, 제8조)
- 특수한 경쟁제품에 대해 사업장밖 생산시설 인정(제10조)
- 복합기능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(제11조)
- 창업초기 기업 기준에 대해 “창업지원법” 준용하여 2→3년 확대(제14조)
- 신기술(공법) 및 법정인증 제품에 대해 사전실태조사 면제(제18조, 제20조)
- 법제처 권고 “행정규칙 용어 정비” 징구하다 → 받다(제8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4개 세부품목에 대한 생산공장·시설·인력·공정 등 확인기준 완화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09월 1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lsk1719@korea.kr
- 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
- 3) 팩스 : 044-204-754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(전화 : (044) 204 - 749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각 1부